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056
----------	-------

제출연월일 : 2026. 9. 3.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통한 국가 재정 운용의 안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입(안 제53조제2항제3호 신설)
- 특정 회계연도에 세수결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세입 보전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의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나.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0조제3항, 안 제70조제6항 단서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경우와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하여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의 이월(안 제72조제1항제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

라. 초과 조세수입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세입예산의 재추계를 통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초과 조세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세입·세출 외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5항)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및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바. 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법률 추가(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53조”를 “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2.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
3.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 보전(補填)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대응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의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제70조제3항제1호 중 “기금은”을 “기금(미래대응기금은 제외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금 및 미래대응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제7호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제70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제2호(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에 전입되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다음 연도까지
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다음다음 연도까지

제90조의 제목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을 “(초과 조세수입 및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고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되,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의 국채 상환

2. 미래대응기금에의 전출

제90조제2항 중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을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할”을 “사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출에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사용”을 “사용(제5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생략)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 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53조, 제90조제1항 및 제6 항----- -----.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 외) ① (생략)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 외)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 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 (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 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신 설>	1.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 우
<신 설>	2.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 (轉貸)하는 경우
<신 설>	3.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 보전(補填)을 위하여 「미래 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 금(이하 “미래대응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 로 전입되는 경우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 6.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기금(미래대응기금은 제외한다)은 -----
--

2. ----- 기금
및 미래대응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제7호는 제외한다)-
-----.

-----.

3. ~ 6. (현행과 같음)

7.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생략)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다만, 제3항제2호(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에 전입되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다음 연도까지
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

② (생략)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

른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다음다음 연도까지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초과 조세수입 및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고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되,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의 국채 상환

2. 미래대응기금에의 전출

② -----

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u>정산</u>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u>정산</u>에 사용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u>사용</u>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u>사용</u>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 ⑨ (생략)	----- ----- ----- <u>정산</u>-----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사용</u>하거나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출에 <u>사용</u>할 --. ⑥ ----- <u>제5항</u>----- ----- <u>사용(제5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u>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	--